# 취 업 규 칙



2024. 04. 01

포체인스 주식회사

# 일반 근로자용



입 안 부 서 : 관 리 팀

2024. 04. 01 제정시행

# 목 차

취업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7				
제2조(적용범위)7				
제3조(사원의 정의)7				
제4조(차별 금지)7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5조(채용)7				
제6조(근로계약)8				
제7조(수습기간)8				
제3장 복 무				
제8조(복무의무)9				
제9조(출근, 결근)9				
제10조(지각·조퇴 및 외출)9				
제11조(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9				
제12조(출장 <mark>)</mark> 9				
제4장 인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1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				
제15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10				
제2절 배치·전직 및 숭진				
제16조(배치, 전직, 승진)11				
제3절 휴직 및 복직				
제17조(휴직사유 및 기간)11				
제18조(휴직명령)12				
제19조(준수사항)12				
제20조(복직)13				
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등)13				

저	5장	근로시	간
---	----	-----	---

제22조(교대근로)13
제23조(근로시간)13
제24조(휴게)13
제25조(탄력적 근로시간제)13
제26조(선택적 근로시간제)13
제27조(간주근로시간제)14
제28조(재량근로)14
제29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14
제30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15
제31조(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15
제6장 휴일·휴가
제32조(유급휴일)15
제33조(연차유급휴가)16
제34조(연차 <mark>유급휴가의 사용)</mark>
제35조(연 <mark>차</mark> 유급휴 <mark>가의 사용</mark> 촉진)17
제36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7
제37조(하기휴가)17
제38조(경조사 휴가)18
제39조(배우자 출산휴가)18
제40조(생리휴가)18
제41조(병가)18
제42조(난임치료휴가)19
제43조(가족돌봄휴가)19
제7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44조(임산부의 보호)19
제45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21
제4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1
제47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21

취업규칙(안)		
	제48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22	
	제49조(육아시간)22	
	제50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22	
	제8장 임 금	
	제51조(임금의 구성항목)23	
	제52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23	
	제53조(비상시 지급)23	
	제54조(휴업수당)23	
	제55조(상여금 지급)23	
	제9장 퇴직·해고 등	
	제56조 (퇴직 및 퇴직일)24	
	제57조(해고) 24	
	제58조(해고의 제한)25	
	제59조(해고의 통지)25	
	제60조(정 <mark>년</mark> )25	
	제10장 퇴직급여	
	제61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25	
	제62조(중도인출)26	
	제63조(퇴직급여의 지급)26	
	제11장 표창 및 징계	
	제64조(표창)27	
	제65조(징계)27	
	제66조(징계의 종류)28	
	제67조(징계심의)28	
	제68조(징계결과 통보)28	
	제69조(재심절차)28	

제	12장	교육
/II	12'8	JIL 44

7\ 12\ 0\\ \ <u>\times</u>
제70조(교육시간)29
제71조(직무교육)29
제72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29
제73조(개인정보보호교육)29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29
제75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30
제7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31
제7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31
제78조(사건의 접수) 31
제79조(사건의 조사)32
제80조(피해자의 보호)
제81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
제82조(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32
제14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83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33
제84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33
제85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제86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34
제87조(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34
제15장 안전보건
제88조(안전보건관리규정)
제89조(안전보건 교육)
제90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35
제91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35
제92조(물질안정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취업규칙(안)
제93조(작업환경측정)35
제94조(건강진단)36
제95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36
제16장 재해보상
제96조(재해보상)36
제17장 보칙
제97조(취업규칙의 비치)36
제98조(취업규칙의 변경)36
부칙
제1조(시행)37
제2조(단시간근로자용)37

# FOUR-CHAINS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취업규칙은 포체인스 주식회사 사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포체인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원에게 적용한다.
  - ②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또는 이 규칙 이외의 다른 회사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사원 과 기간제 사원, 단시간사원을 말한다.
- 제4조(차별금지) 회사는 사원의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정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장애, 출신 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 제5조(채용) ①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는 <mark>자</mark>는 다음 <mark>각</mark>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이력서 1통
- 2. 자기소개서 1통
- ② 회사는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게 신체적 조건(용모·키·체중 등),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용심사 등의 자료로 요구하지 않는다.

- **제6조(근로계약)** ①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자에게 명확히 제시한다.
  -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 3. 휴일
  - 4. 연차유급휴가
  - 5.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6. 근로계약기간(기간제사원에 한정한다)
  - 7.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
  - 8. 「근로기준법」 제10장에 따른 기숙사에 관한 사항 (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mark>결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mark>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원에게 교<mark>부</mark>한다. 이 경우 회사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2.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 3. 휴일
  - 4. 연차유급휴가 **FOUR-CHAINS**
  - 5.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6. 근로계약기간(기간제사원에 한정한다)
  - ③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제1항의 일부 내용을 대신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해당 내용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할 수 있다.
- **제7조(수습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 기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수습 기간은 근속 년수에 포함하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3장 복 무

제8조(복무의무)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사원은 회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 4. 사원은 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사원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출근, 결근)** ① 사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 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사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사원은 근로시간 중에는 사적인 용무를 이유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조퇴 또는 외출할 수 있다.
  - ③ 사원이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① 회사는 사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 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2조(출장)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 제4장 인 사

#### 제1절 인사위워회

- 제1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부서장(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과 근로자위원 등 사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때 대표이사는 근로자위원 등 사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로 한다.
  - ③ 위원회에는 인사(총무)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 2. 사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사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제15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⑦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절 배치·전직 및 숭진

- **제16조(배치, 전직, 승진)** ①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 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연령, 고용형 태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절 휴직 및 복직

- 제17조(휴직사유 및 기간)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 1. 업무 외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1년의 범위 내에서 요양에 필요한 기간
  -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징집 또는 소집 기간
  - 3. 회사가 지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직무훈련 등을 하게 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수 등에 필요한 기간
  - 4.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사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 하 이에 따른 휴직을 "육아휴직"이라 한다): 1년 이내
  - 5. 사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 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 연간 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

- **제18조(휴직명령)** ① 회사는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휴직명령 여부를 결정하여 사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한다.
  - ② 회사는 휴직사유가 제17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③ 회사는 휴직사유가 제17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탄력적 운영 등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 1.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사원 외에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3. 회사가 직업안정기관에 <mark>구인신</mark>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4. 사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mark>인하여 정</mark>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
  - 5.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신청한 사원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 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사원이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9조(준수사항)**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원이 육아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 제20조(복직) ① 사원은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7일 내에 제17조 각 호에 따른 휴직사유별 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③ 사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 ④ 회사는 휴직 중인 사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 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등) 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되,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 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는 제외한다.

#### 제5장 근로시간

제22조(교대근로) 각 사원의 근무형태는 0교대로 한다.

- 제23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1주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하고, 이 중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며, 매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30시간으로 한다.
  - ③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0:00부터 17:00까지 6시간으로 한다.
- 제24조(휴게) ① 휴게 시간은 제23조 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 사정에 따라 휴게 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게 시간을 달리 정할 경우, 회사는 해당되는 사원에게 미리 공지하다.
- 제25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 제26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 제27조(간주근로시간제) ① 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② 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8조(재량근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사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업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서면 합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대상 업무
  - 2. 회사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사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mark>서</mark>면 합<mark>의</mark>로 정하는 바에 따<mark>른</mark>다는 <mark>내용</mark>
- 제29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6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 사원은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사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1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 ②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산하여 사원에게 지급한다.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④ 회사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사원에게 지급한다.
  - ⑤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제30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사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 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제31조(근로시간 및 휴게 · 휴일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1. 감시 · 단속적 업무로서 고용노<mark>동</mark>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관리 · 감독 업무 또는 기밀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이 야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제6장 휴일 · 휴가

제32조(유급휴일) ① 모든 사원의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 ②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결근이 없는) 사원에 대하여는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 ③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33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③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1. 사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 한 기간
  -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⑤ 회사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⑥ 주 5일 근무가 <mark>아</mark>닌 경우, 제 1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 제34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① 연차유급휴가는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있다.
  - ② 사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에게 발생한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사원은 휴가 사용일 30일 전에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31일 안에 휴가를 신청했을 경우, 회사의 판단으로 반려 또는 승인할 수 있다.
  - ④ 사원은 전체 인원의 50% 이상이 근무 가능한 상태, 같은 직급의 50%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에만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
  - ⑤ 사원이 휴가를 사용하여 5일 이상 공백기가 생길 경우, 회사의 판단으로 신청은 반려될 수 있다.

#### 제35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① 회사는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에게 발생한 유급휴가는 제외)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사용촉진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 1.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연차유 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
-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에게 발생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사용촉진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사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회사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함
-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원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제36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 **제37조(하기휴가)** 회사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이에 하기(夏期)휴가로써 주말과 붙여 2일 휴가를 진행한다. 정확한 휴가일은 휴가 진행 최소 7일 전에 공지하도록 한다.

- **제38조(경조사 휴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사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 1. 본인의 결혼: 5일
  - 2. 본인 ·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 3. 본인 ·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4일
  - 4.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5일
  - 5. 본인 ·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 ②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 제39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회사는 사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유급휴가 임금 지급시 사원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사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휴<mark>가는 1회에</mark>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제40조(생리휴가) 회사는 여성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 제41조(병가) ① 회사는 사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2조(난임치료휴가) ① 회사는 사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사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③ 회사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사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3조(가족돌봄휴가) ① 회사는 사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있다.
  - ②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r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사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신청한 사원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사유가 있어 신청한 사원이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제44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 ②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최초 75일)은 유급으로 부여하되, 유급휴가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시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한다.

- ④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 외한다.
-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⑤ 회사는 사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mark>험</mark>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 ⑥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 ⑦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사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⑧ 회사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 ⑨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 사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아니하다.
- ⑩ 회사는 임산부 등 여성 사원에게 r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 제45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회사는 임신한 여성 사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 제4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회사는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해당 사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 ⑤ 회사는 사원이 <mark>육</mark>아기 <mark>근로</mark>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mark>보험</mark>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 제47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회사는 제46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사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 ② 제46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사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회사와 그 사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 ③ 회사는 제46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사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사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48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7조와 제46조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는 다음과 같다.
  - 1. 사원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사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사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제49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사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4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 제50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2. 사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3. 55세 이상의 사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 4. 사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②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해당 사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사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회사는 사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사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제8장 임 금

- 제51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기타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 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 ② 제23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22:00~06:00)에 근로한 경우,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③ 제2항의 가산을 위한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및 기타수당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나누어 계산한다.
- 제52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 사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원이 지정한 사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 ② 회사는 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의 총액,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지급일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한다.
  - ③ 회사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3조(비상시 지급)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 1.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 3. 사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 **제54조(휴업수당)**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사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 ②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상여금 지급) 회사는 상여금, 성과급 지급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제9장 퇴직 · 해고 등

**제56조(퇴직 및 퇴직일)**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 2. 사망하였을 경우
-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 상 퇴직일
- 2.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mark>아니하고 사</mark>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만,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 3. 사망한 날
- 4. 정년에 도달한 날
-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 6. 해고가 결정 · 통보된 경우, 해고일
- 제57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제58조(해고의 제한)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 ② 산전(産前) · 산후(産後)의 여성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이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 **제59조(해고의 통지)** ①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 재하여 통지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3.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mark>지장을</mark> 초래하거나 <mark>재산</mark>상 <mark>손</mark>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 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제60조(정년)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 제10장 퇴직급여

**제61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회사는 퇴직하는 사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 ① 회사는 퇴직하는 사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수준 및 납입일 등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다.

####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수준 및 납입일 등 퇴직급여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다.
-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 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표준계약서에 따른다.

#### <참고: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제61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회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원을 제외하고 퇴직하는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62조(중도인출)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 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원의 경우 동법 제23조의 13)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의 중도 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의 제공에 응하여야 한다.

#### <참고: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제62조(중간정산) 회사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사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제63조(퇴직급여의 지급)** ① 회사는 사원이 퇴직한 경우 사원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 ② 사원이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 제11장 표창 및 징계

제64조(표창)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 1. 회사의 업무능률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 2. 회사의 영업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 4. 안전보건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 5.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65조(장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 2. 업무상 비밀 및 <mark>기</mark>밀을 누<mark>설하여</mark>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 3.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 4.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 5.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6.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 8.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 10. 다른 사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 1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안전보건 질서를 위반한 자
- 12. 기타 법령 위반 등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제66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견책: 해당 사원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 제67조(장계심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 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2의 출석통지를 각통보한다.
  - ② 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2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3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④ 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⑤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징계심의와 징계의결을 진행하고, 별지4의 징계의결서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⑦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 **제68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사원에게 별지5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 제69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절차는 제67조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 제12장 교육

- 제70조(교육시간) 이 규칙에서 규정한 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 **제71조(직무교육)** 회사는 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사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72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회사는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을 내용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한다.
  - ② 사업주 및 사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73조(개인정보보호교육)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인 사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개인정보취급자인 사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제7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사용자, 사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5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3. 다른 사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mark>동안</mark> 근로계약서 등에 명<mark>시되어</mark>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 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mark>한</mark>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사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FOUR-CHAINS

- 제7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② 사용자, 사원은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절차
    -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 7.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 8.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련 비밀 누설 금지
  - 9.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 ④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제7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회사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 제78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 자 또는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사용자 또는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 제79조(사건의 조사)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 ② 조사는 사용자 또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 ③ 조사가 종료되면 사용자에게 보고한다.
  - ④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80조(피해자의 보호) ①회사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사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원(이하 "피해사원등"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사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피해사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직장 내 괴롭<mark>힘이</mark>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③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사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제81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는다.
- 제82조(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응대사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고,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마련과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사원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사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전환하거나 휴게시간을 연장,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및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조치 등을 한다.
  - ③ 사원은 회사에게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근로 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제14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83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② 사업주 및 사원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도록 한다.
  -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 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④ 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사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 거나 갖추어 둔다.

제85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둔다.

- ② 제1항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6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사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사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피해사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 제87조(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회사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사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하여 해당 사원이 그로 인한 고층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② 회사는 사원이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 제15장 안전보건

- 제88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회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사원에게 알린다.
  - 1. 안전·보건 관리<mark>조</mark>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② 각 부서는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사원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89조(안전보건 교육) 회사는 사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제90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 제91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회사는 사원이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원은 작업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제9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정하는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사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도록 한다.
- 제93조(작업환경측정)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때,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사원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킨다.
  - ③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사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제94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사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2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해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 ③ 사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다만, 회사가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사원의 건강을 유지하다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치 개선 등 동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 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2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사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제95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회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 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사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 ② 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의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6장 재해보상

- **제96조(재해보상)**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다.

#### 제17장 보칙

- 제97조(취업규칙의 비치) 회사는 이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 · 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사원들 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98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사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사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시간 근로자용)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